

위약금 조항 쟁점 - 위약벌 vs 손해배상액 예정 + 감액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 17. 선고 2019가합502421 판결



### 위약금 감액 여부에 대한 판단

#### 1. 관련 법리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당사자 사이의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 특히 하나의 계약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손해배상예정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정

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은 위약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 82944, 82951 판결 참조).

위약벌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에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7608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인 공서양속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2.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위약벌 해당

앞서 든 사실 및 그 인정근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약금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금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실제 손해액의 배상을 넘어서 이 사건 계약이행을 심리적

으로 압박하여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위약벌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약금 감액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및 최고 절차 등을 규정하여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별도로 정해두는 한편, 제(4)항에서 귀책사유 없이 해지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일방 당사자가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규정된 사유 내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제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항은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반하여 상대방에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9조 제(4)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때에도 제1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제9조 제(4)항에 의한 해지의 경우 당사자들이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모든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위약금의 물취로 해결하고 기타의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청구는 배제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위약금을 손해배상예정액으로 보게 되면 제12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금에다 이 사건 위약금까지 더하여 이중의 배상을 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

③ 이 사건 위약금은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경우에 손해배상으로도 전보되지 않는 어떤 다른 손해의 발생을 염두에 두고 그 배상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한 경우 원고가 제재적 성격을 지닌 위약금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 내부사정의 변화 등 피고 사정에 의한 일방적 중도 해지를 방지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계약의 이행을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상의 대상장비 임대 의무 이행을 위해 E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의 대상장비를 새로 구매하게 하여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이르렀고, 이 사건 별개계약에서도 위 제9조 제(4)항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는 바(다만 위약금은 계약금액에 연동되는 바 계약금액을 달지 정하여 위약금 금액은 상이하도), 피고의 해지권 행사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별개계약 상의 위약금을 지출하여야 할 입장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⑤ 위에서 살핀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을 두게 된 경위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공서양속에 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가합502421 판결

국제계약, 영문계약, 계약분쟁, 손해배상, 민형사소송,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